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2019. 2. 26.(화)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계획	1
» 공공기관 청렴도 개요	5
»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1
» 2019년도 청렴도 측정 절차	23
»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발표	31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탁금지법 사례	39
» 부패공익신고제도 안내	61
» 붙임자료	85
<붙임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대상기관	87
<붙임 1> 『청렴도 측정』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89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계획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계획

» 목 적

- '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전반적인 내용 소개 및 기관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 기관별 청렴업무 담당자 간 정보교류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 26(화) 13:30 ~ 17:00
- 장 소 : KT대전인재개발원

» 참석대상

- 388개 기관(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대상 기관	중앙행정 기관	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 단체	교육청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유관 단체	지방 의회
388	6	1	184	2	23	33	97	42

» 주요내용

- 청렴도 측정모형 등 평가방향 설명
- 기관별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 세부시간계획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및 행사안내	사회자
14:00~14:02 (2')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2~14:05 (3')	인 사 말 씀	청렴조사평가과장
14:05~15:00 (5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명 및 질의·응답	이진희 사무관
15:00~15:10 (10')	휴 식	
15:10~15:30 (20')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발표 - 청렴! “소통을 넘어 신뢰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30~16:00 (35')	청탁금지법 사례 - 주요 질의 답변 사례 -	김지영 서기관
16:00~16:20 (20')	부패공익신고제도 안내 -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바로 알고 처리하기 -	최진경 사무관
16:20~16:25 (5')	마무리 인사말씀	청렴조사평가과장
16:25~16:35 (10')	참석자 설문지 작성	
16:35~17:00 (25')	청렴도 측정 관련 자유 질의·응답의 場	희망기관에 한함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공공기관 청렴도 개요

I 청렴도 측정의 의의

■ 청렴도의 개념적 정의

- ‘청렴도’란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는 ‘행정 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청렴도’를 정의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

■ ‘부패행위’의 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③ ①과 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④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외부강의 등의 의무·금지·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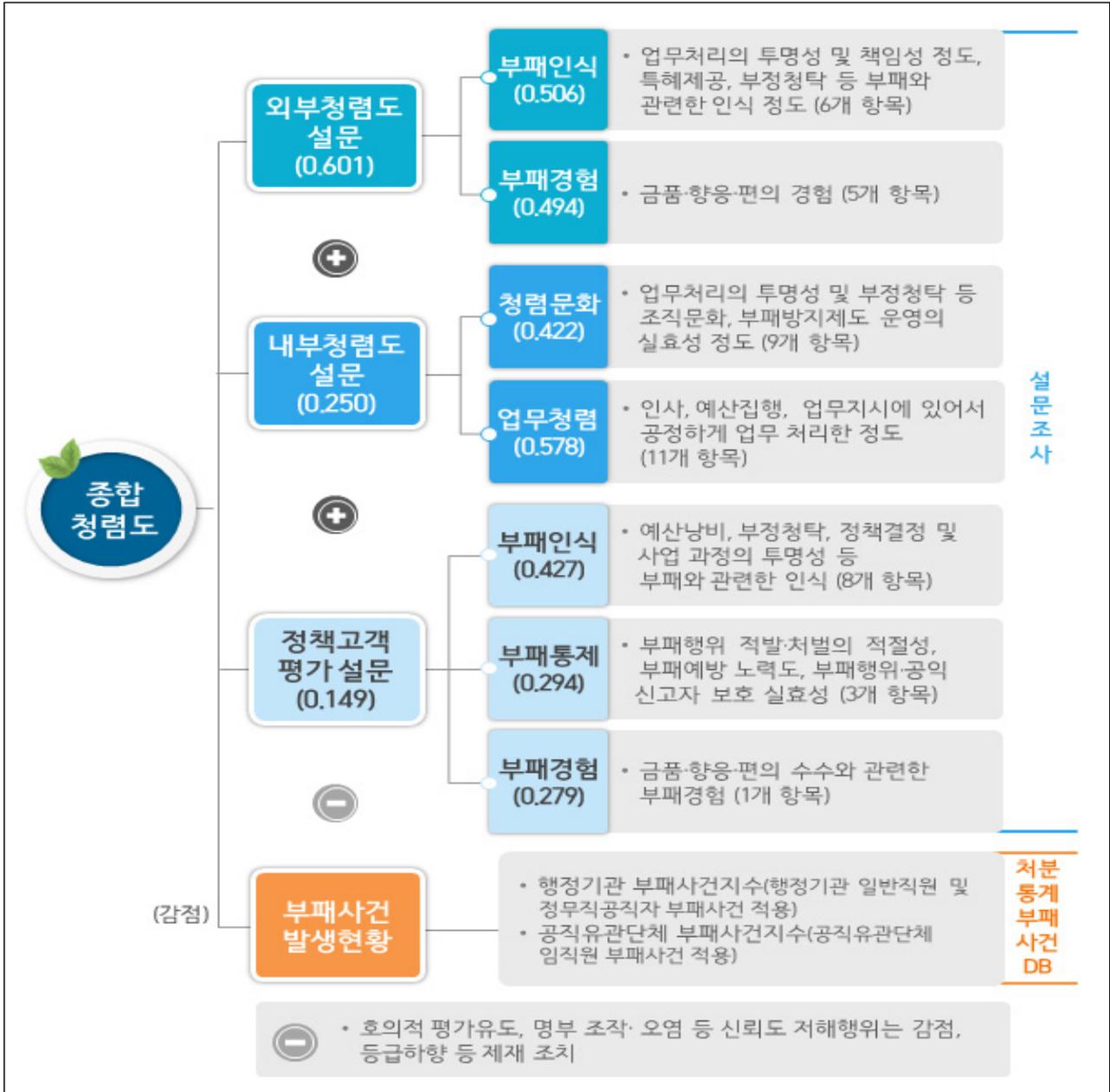
■ 청렴도 측정의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

- 각급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반부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II 청렴도 측정 모형

■ 종합청렴도 모형(공통모형, 2018년도)



※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 가중합산

※ 공직유관단체 I, II 유형은 외부청렴도(0.622), 내부청렴도(0.224), 정책고객평가(0.154) 가중합산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 가중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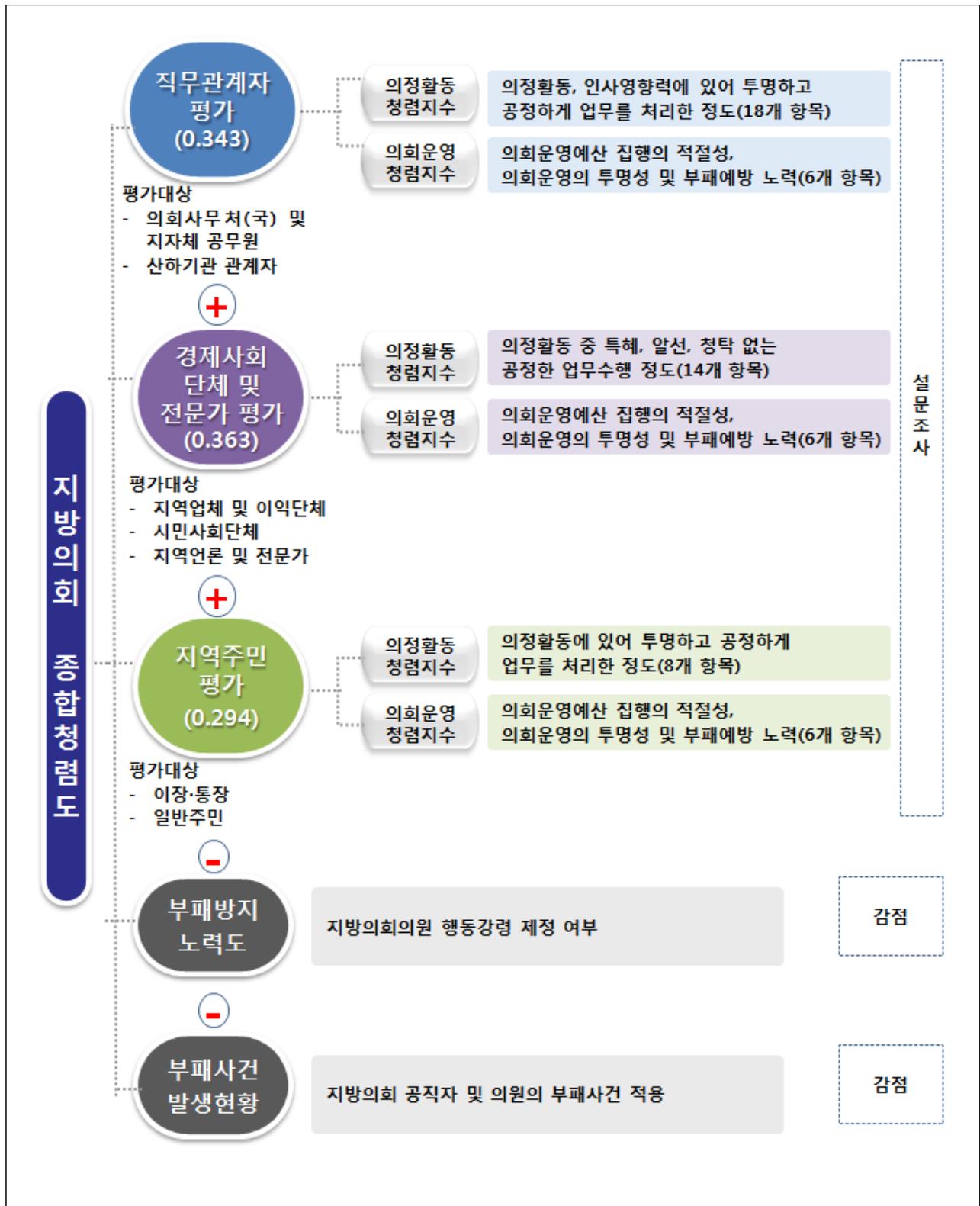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모형(2018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모형(2018년)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모형(2017년)



■ 측정 모형 연혁

연 도	측정 모형	측정 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333개

모형 개편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 업무청렴(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09년		478개
'10년		711개
'11년		684개

모형 개편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 업무청렴(인사·예산·업무지시) ·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시 감점 등 제재조치 ※ '18년 외부청렴도 : 부패인식, 부패경험 영역 측정	662개
'13년		699개
'14년		721개
'15년		760개
'16년		733개
'17년		702개
'18년		705개

※ 국·공립대학 청렴도는 2012년 이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2013년 이후, 지방의회 청렴도는 2013년 이후 특화모형으로 측정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I 2019년도 측정대상기관

- 지방의회 측정, 지속적으로 청렴도 결과가 우수한 기관 1년 면제 등 측정 대상기관 조정
- 전년도(705개)보다 28개 기관 증가한 총 733개 기관 측정(잠정)

■ 공통모형 적용 기관

- (중앙행정기관) 전년과 동일하게 44개 중앙행정기관 측정
 - ※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을 국무조정실과 별도로 측정하여 측정 강화
- (지방자치단체) 전년과 동일하게 광역(17개), 기초(226개) 기관 측정
- (교육청) 교육청 전수 측정(17개), 지원청은 관내 지원청이 5개 이하인 경우 전수 측정, 10개 이상인 경우 3년 주기 측정(74개)
- (공직유관단체) '18년 측정 대상기관 중 과소표본 2개 기관과 우수기관 1개 기관을 제외한 232개 기관 측정

■ 특화모형 적용 기관

- (지방의회) 광역의회는 전수 측정하고, 기초의회는 부패발생 개연성,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25개 기관 선정
 - ※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 구성이 변경되는 점과 '14년의 선례를 고려하여 '18년에는 지방의회의 청렴도 미측정
- (공공의료기관) '18년 측정 대상기관 유지, 46개 기관 측정
- (국공립대학) 우수기관으로 1년 측정 면제되는 1개 기관을 제외한 4년제 국공립대학 35개 측정

< 2019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안)>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지방의회		공공의료 기관	국공립 대학
			광역시	기초	시도	지원		광역시	기초		
'18년	705	44	17	226	17	73	235	0	0	46	47
변동	+28	-	-	-	-	+1	△3	+17	+25	-	△12
최종대상 (잠정)	733	44	17	226	17	74	232	17	25	46	35

< 참고 : '19년 측정 대상기관 면제·제외 기준(안) >

① 면제 기준 : 청렴도 우수기관(1년 면제)

- '18년 청렴도 1등급 기관 중 '16~'17년 청렴도 지속 2등급 이상이면서 3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는 기관(통계청, 법제처, 한국감정원, 군인공제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원도 삼척의료원)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경우 평가 3등급 이하 기관(군인공제회), 행안부 정부혁신평가(청렴도 측정결과 정량지표 반영) 대상 기관(통계청, 법제처)은 면제 제외
- ※ 면제 대상 기관 중 지속 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19년 지속 측정(강원도 삼척의료원)
- ※ 면제 통보 후 설문측정 전까지 부패사건 발생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종 측정대상에 포함

② 제외 기준

- '18년 청렴도 측정 시 과소표본으로 종합청렴도가 산정되지 못한 기관
- 국립 교육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1 측정업무

■ 측정 업무의 발굴 및 조정

- 현 측정업무 중 지속적으로 청렴도 점수가 높거나 부패경험이 없는 업무, 조사표본 수 부족으로 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은 재검토
- 부패개연성이 높고, 국민안전 관련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패취약 분야 업무 추가 발굴

■ 기관별 지방청 등 측정

- 지방청, 지사, 지역본부 또는 실·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표본 확보가 가능한 기관의 경우 세부측정 결과 제공 검토
- 산하 행정구가 있는 기초 시는 행정구별 측정 결과 제공

2 측정모형

■ 기존 측정모형 보완

- 측정 영역 및 문항별 가중치 재조정, 설문 문항 보완 등을 통해 주관적 응답 가능성 최소화
- 이해충돌 등 최근 부패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규 반영 항목 등 추가 검토

■ 기관유형별 특화된 측정모형 적용

-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각 기관유형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모형에 근거하여 측정
 - ※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은 각 유형별로 7월 중 실시계획 별도 시행 예정

■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 (행정기관) 행정기관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를 점수화
 - 처분자료 반영 기간('18.7월 ~ '19.6월)내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현황을 점수화
 -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파견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 징계 등 처분자료 외에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부패 사건은 징계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영
 - ※ 징계가 적용되지 않는 정무직 공직자의 부패사건도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을 거쳐 감점 반영
-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행위를 점수화
 - 전년도 반영시점 이후 금년도 평가기간 내 언론보도, 수사기관 보도 자료, 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부패사건을 포함
 - 징계 등 처분현황, 외부적발통보 건 등을 통해 확인한 부패사건도 보완적으로 적용
- 기 감점한 건, 기관 자체적발건은 감점에서 제외
- 부패사건의 발생과 적발·반영 시점 간 시차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감점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신뢰도 저해행위 관리·제재 강화

○ 청렴도에 대한 과열이 우려되는 기관 등에 대한 현지점검 확대

- 9~10월에 집중되었던 현지점검을 확대하여 상·하반기 실시

※ 상반기에는 표본 관리 등 신뢰도 저해행위와 함께 기관별 측정업무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병행, 하반기에는 측정 명부 점검 및 신뢰도 저해행위 집중 점검

※ 표본 관리 등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시 높은 수준의 페널티 부과

○ 설문조사 기간 중 **상시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 확인

< 감점 대상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예시) >

구 분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리한 답변 예상자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오기, 대리응답 등
표본 관리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이메일, 공지, 교육, 간담회를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 청렴도 측정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참조
부패사건현황 자료 제출 누락, 허위사실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사건현황 자료제출 누락 • 부패사건현황 자료 확인 시 허위사실 제출

○ 자체청렴도 측정의 경우 실시 횟수 및 기간 제한은 유지하되, 자체측정 설문 내용의 제한은 완화

3 결과 발표

■ 기관 유형 조정·재분류 검토

- 공공기관 분류(기재부), 기관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 유형 등 기관 유형 분류 조정 검토

■ 결과 발표 방식

- 전년과 동일하게 기관유형별 등급만 발표하고, 기관의 세부 분석자료는 기관에 별도 제공

■ 기관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19. 3~6월)

- 측정대상업무 및 측정모형 관련 기관 의견 수렴(3~5월)
- 측정모형 및 설문지 설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4~6월)

■ '19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8. 6월 중)

- 측정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대상업무 등 확정
- 명부작성 기준,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 제출 기준 안내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확인('19. 7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명부, 부패공직자 자료 수령
- 제출명부 오기, 누락, 오염여부 등 점검

■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19. 8~11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실시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여부, 표본관리행위 등 점검

■ '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19. 12월)

- 측정 결과 종합 분석 및 보도자료 제공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2019년도 청렴도 측정 절차

I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선정

■ 측정대상업무 선정 기준

- 측정대상업무 선정은 외부청렴도에서 고려
- ① 대만대기관 업무일 것, ② 충분한 측정대상자 표본 확보가 가능할 것, ③ 해당 기관과 측정대상자가 업무 접촉이 있을 것, ④ 기관의 대표적 업무, 부패개연성 있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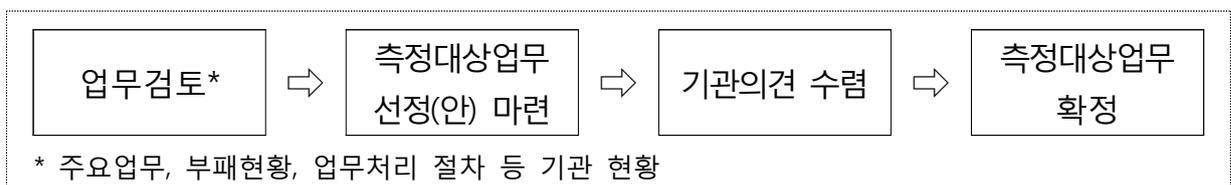
■ 측정대상업무 유지 및 변경 기준

- (유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낮거나, 부패사건 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업무, 관련 예산 규모가 크거나, 해당기관과 접촉하는 국민의 규모가 커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업무
- (변경) 표본조사가 곤란한 업무 및 소관기관이 변경된 업무 등
 - ※ 표본조사가 어렵더라도 기관의 핵심업무인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측정 실시

■ 측정대상업무 선정 절차

- 측정대상업무 선정은 매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며, 확정된 측정 대상 업무는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통해 각급 기관에 통보
- 측정대상업무는 각급 기관의 주요기능, 언론에 보도된 부패사건, 대민·대기관 업무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측정대상업무 선정 절차>



II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 측정대상자 및 명부 제출 범위

- (법적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의 자료 등 제출 요구권에 따라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외부청렴도) 당해연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측정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 또는 담당자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 '19년 청렴도 측정의 경우 '18. 7. 1일부터 '19. 6. 30일까지
- (내부청렴도) 당해연도 6월 30일 현재 측정대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으로 본부, 소속기관, 지방관서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정책고객평가) 당해연도 6월 30일 현재 측정대상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출입기자, 국회관계자, 학계 등), 업무관계자(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 명부작성시 주의사항

- 측정대상자 명부는 각 기관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실시계획의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을 숙지
- 부패공직자 처분자료, 감사수감내역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징계, 훈계·주의 관리대장, 징계의결서, 처분요구서 등은 국민권익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제출

※ (참고) '18년 명부 제출서식 : 하나의 엑셀파일에 시트별로 작성

1. 외부청렴도 : 1-1 외부청렴도 대상자 명부 표지, 1-2 외부청렴도 민원인, 1-3 외부청렴도 계약입찰참가자 명부
2. 내부청렴도 : 2-1직원명부, 2-2정원표
3. 정책고객평가 : 3-1전문가 명부, 3-2업무관계자 명단, 3-3전입직원 명부
4. 부패사건 현황 : 4-1부패행위 징계목록, 4-2주의 등 처분목록, 4-3감사수감내역, 4-4감사처분목록

Ⅲ 청렴도 측정 실시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확인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명부, 부패공직자 관련 자료 등 수령
- 제출명부 상의 오기, 누락, 중복여부 등을 검증

■ 청렴도 측정 실시

- 외부청렴도는 기관 및 민원인 규모, 내부청렴도는 정원, 정책고객평가는 세부 정책고객 유형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규모결정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실시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는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되며, 전화조사(온라인 조사 병행)로 진행
 - 내부청렴도는 측정대상자를 본부·소속기관별, 직급별 구성비에 따라 우선할당 후 표본추출하여 온라인(모바일, 이메일) 설문조사로 진행
 - 정책고객평가는 측정대상자를 유형별로 할당 한 후 표본추출해 전화조사(온라인조사 병행)를 통해 측정 실시

■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

-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 및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표본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점검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시 제재기준에 따라 감점 등의 조치
- 현지점검 대상기관은 권익위에 제출한 측정대상자 명부, 부패공직자 관련 자료, 징계대장,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대장, 기관 인트라넷 및 시스템 열람 권한 등을 사전에 준비

IV 청렴도 측정 결과 집계 및 발표

■ 점수집계 방법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내부·정책고객평가 설문점수에서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10점 만점으로 산출
 - 외부청렴도는 외부청렴도 설문점수에서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반영하여 산출(내부청렴도 동일)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은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지수로 구성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공직자의 직위·기관의 총 부패금액, 정원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 (부패사건지수) 전문가 평가심의회에서 평가한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각 항목을 점수화
- 표본 관리, 호의적 응답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조치 가능

■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 매년 12월 종합청렴도 및 외부·내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각 영역별 등급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부패방지시책평가 홈페이지 공개 유의사항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 대상기관은 측정·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 공개실적은 법적 게재사항으로 각 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 결과를 기한내에 홈페이지에 공개

■ 홈페이지 공개실적(예시)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국민의 나라
정의로써 대결민족

국가상징
알아보기

고충민원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국민참여 | 정책홍보 | 위원회소개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충민원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 | 행정심판

공지사항 +

2018년 민간보조사업 선정 결과 공고(제 2018-29호)

국민권익위원회 전입희망자(방송통신사...)

국민권익위원회 <2018 청백리포터> 모...)

국민권익위원회 전입희망자(6급7급8급...)

국민권익위원회 일반임기제576급, 일반...

보도자료 +

NEWS

'저소득층 문화체험 지원 사업비' 3억 원
부당하게 경건 기행집 대표 3명 적발

국민권익위 - 대한상사중재원, 기업활동...

장관 지시에 헌법소원 제기했다가 강제...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

*공공 클릭카드에 '부패' 경고그림 문구...

사진뉴스 +

인사말 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민원 현장 둘러보는 국
민권익위원회 산근포 상
임위원

국민권익위, 고충·산업
위기지역 영암서 기업들
부즈만 현장회의

팝업존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종합청렴도 1등급
- 외부청렴도 1등급
- 내부청렴도 1등급
- 정책고객평가 1등급

2/20

<부패방지시책>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국민의 나라
정의로써 대결민족

국가상징
알아보기

고충민원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국민참여 | 정책홍보 | 위원회소개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충민원 | 부패·공익신고 | 청탁금지 | 행정심판

공지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2019 청백리포터> 모
집 공고(제2018-74호)

보도자료 +

NEWS

국제투명성기구(TI)의 '18년 부패인식지
수(CPI) 발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 +

설 앞두고 시장 방문한 박은정 국민권
익위원장

팝업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등급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청렴!
“소통을 넘어 신뢰로”
조직문화가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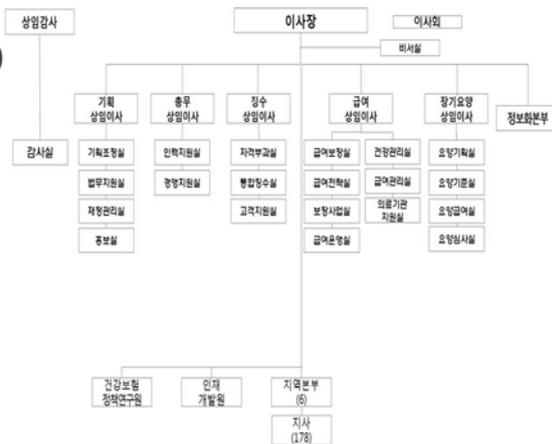


건강보험공단 조직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조직현황

비전: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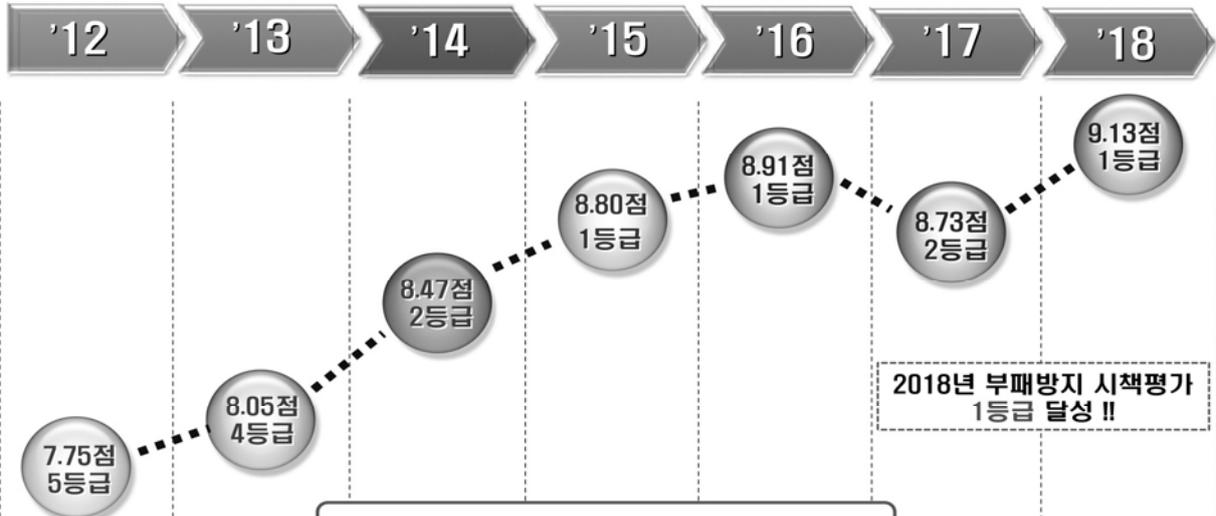
- 본부(21실, 1본부, 연구원, 인재개발원)
- 지역본부(전국 6개)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 지사(전국 178개)
 - 장기요양운영센터 227센터
 - 출장소 54개소



정원 총 14,322명 ... 2019.1월 기준

공단의 청렴도 측정결과 변화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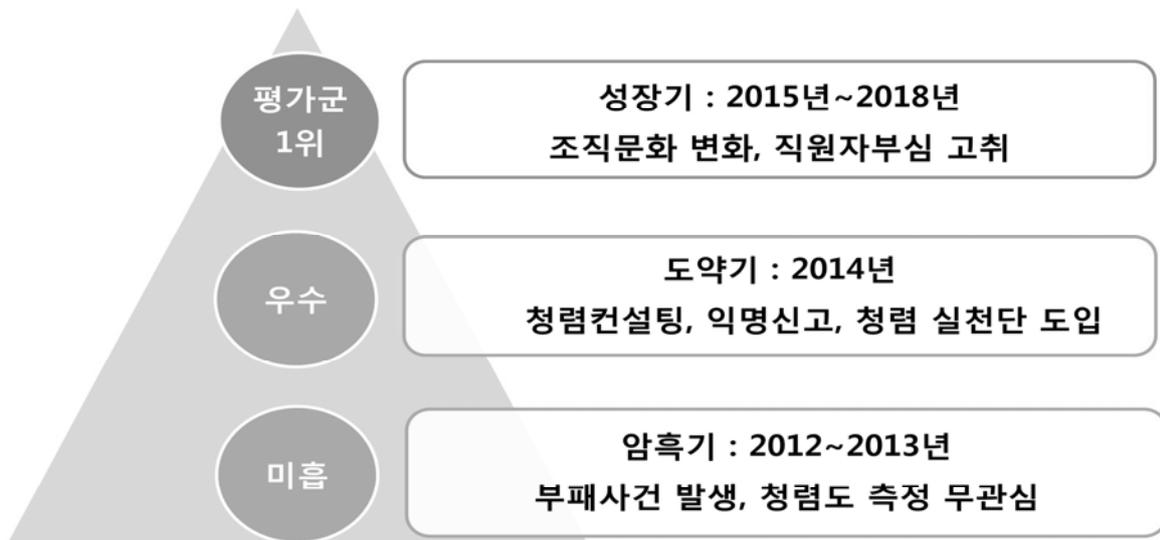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

2018년도 정부 청렴도 주요성과

- (종합청렴도)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최상위 기관
 - (외부청렴도) 10점 만점 중 9.32점으로 역대 최고점 획득
 - (내부청렴도) 조직문화 개선 노력으로 공단 최초 1등급 달성

공단의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문제점

개선방안

1

특정항목 평가점수 취약



문제점 진단을 위한 청렴컨설팅 실시

2

청렴도 평가에 소극적



전국 지사 소통을 위한 청렴실천단 운영

3

매년 감점요인 발생



자정활동 강화를 위한 익명신고 활성화



공공기관 경영 우수사례 선정

취약원인 분석

- 설문결과 분석
 - 연고주의 항목 취약
- 컨설팅 방향 설정
 - 홍보 및 익명신고 안내

현장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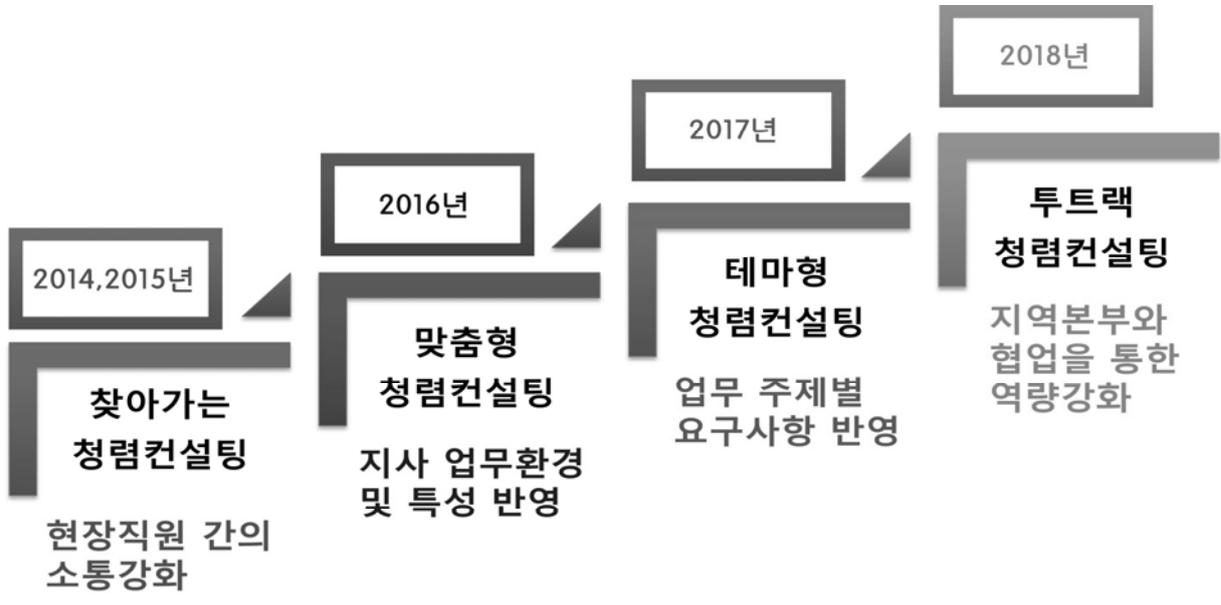


성공요인

- 현장의 목소리 청취
 - 토론식 해결방안 마련
- 직원 의식변화
 - 연고주의 항목 상승

청렴컨설팅의 변화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전국 지사 소통을 위한 청렴실천단 운영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자율적 청렴활동 강화

청렴실천단 운영 **대내활동** **청렴 캠페인**

The first image shows a meeting of the Integrity Action Team with members seated around a long table. The second image shows an information board with the text: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떠한 청탁 사례도 받지 않습니다.'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oes not accept any requests for special treatment.) and a thumbs-up icon. The third image shows a hallway campaign with people walking and a sign that says '나가는 길' (Exit).

자정활동 강화를 위한 익명신고 활성화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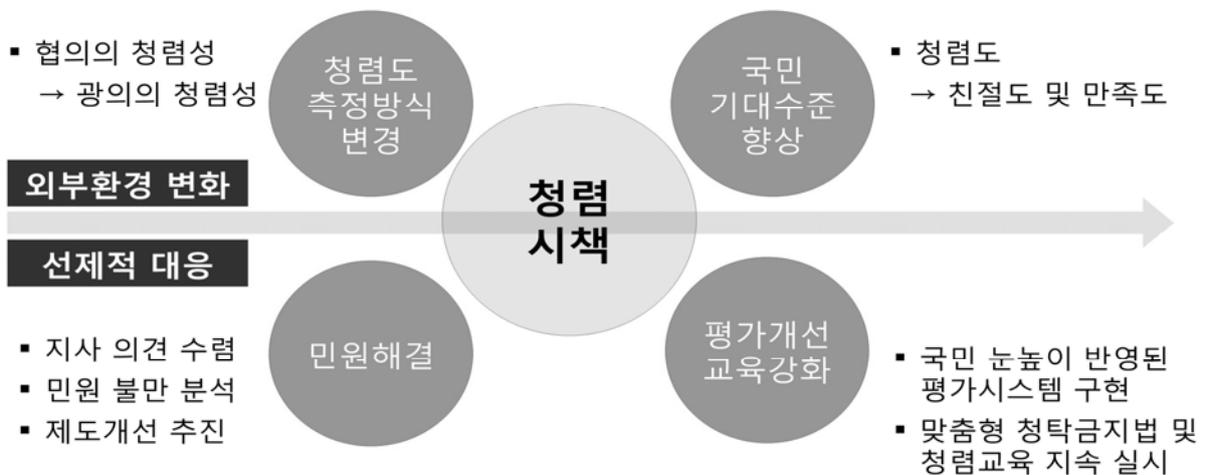
익명 신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입) 2013. 7월 ▪(목적) 신분노출의 위험 없이 익명으로 비위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반부패시스템 (헬프라인) 운영 → 특감 및 감찰전환 00건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사전예방) 금품수수 건 자체적발 및 제도개선 ▪ (인사검증 강화) 승진자 검증으로 인사투명성 제고 ▪ (갑질 및 미투 예방) 갑질 및 미투신고 창구역활 수행

향후 추진방향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예측되는 환경변화 및 선제적 대응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청탁금지법 사례

- 주요 질의 답변 사례 -

쉬운 청탁금지법 사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사례 1. 적용대상(제2조)

Q.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사례 2. 적용대상(제2조)

Q. 공무원 임용유예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임용유예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3 적용대상(제2조)

Q. 대학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고(「고등교육법」 제17조)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9. 8. 1.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

· 사례 4. 공무수행사인(제11조)

Q.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그 소속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A.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해석 상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해석 상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5. 부정청탁(제5조)

Q.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제재를 받나요?

A. 법 제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사례 6. 취업추천(제3호)

Q. 대학교수가 민간 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사례 7. 인사고충 및 상담(제3호 관련)

Q. 자신을 위해서 직접 희망 부서, 승진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하는 것(금품등 수수 없음)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령 위반** (제9호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것도 포함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등은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신의 인사와 관련된 희망부서 및 승진 등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례 8. 골프장 및 콘도 예약(제9호 관련)

Q. 직무관련자가 공공기관에서 소유한 골프장의 예약 또는 공공기관 소속 콘도형 연수원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특정인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 제5조 제1항 제9호)

▪ 사례 9. '학교의 입학, 성적 등 처리(제10호 관련)

Q.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고 담당교수에게 종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0호)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사례 10. 금품등 수수, 선물(제8조제3항제2호)

Q.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담당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기로 한 후 담당 경찰에게 4만 5천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경우 허용되나요?

A. 고소인과 담당 경찰관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나, 위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청탁 여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의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 등의 직무의 내용, 고소인과 담당 경찰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례 11. 선물(제2호)

Q. 직무관련자가 내방 시 부서에서 부서원 10명이 나눠먹으라고 5만 원의 간식을 가져왔을 시,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인당 5천 원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A. 직무관련자가 가져 온 5만 원 상당의 간식은 청탁금지법령상의 '선물'에 해당하고, **특정 부서원에게 제공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로 가져온 선물은 부서장에게 제공하는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례 11-1. 선물의 가액평가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례 12. 상품권 제공(제2호)

Q.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5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권의 선물을 받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사례 13. 식사, 선물(제2호)

Q.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나 선물 제공이 가능한가요?

A. 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사례 14. 경조사비(제2호)

Q.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경조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수수해야 하나요?

A.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1회 1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 내(5만원)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5. 경조사비(제2호)

Q. A중앙부처는 해당 부처 소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甲의 부친상에 부의금 5만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회기중이 아닌 경우)?

A. A중앙부처(기관장)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국회의원 甲은 금품등의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1).

· 사 례 16.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Q.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지역 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A.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이 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의 경우 그 후원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법 제8조 제3항 제8호)

또한,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허용(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사례 17. 친목단체의 기준에 따른 금품등(제5호)

Q. 전국○○학교 교감협의회(친목단체)의 규약에 따라 승진·전보 시 5만 원 상당의 축하난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순수 친목단체로서 각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회비로 구입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등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로 구입하는 것은 아님

A. 전국○○학교 교감들 사이에는 통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2항 참조)

다만, 교감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또한, 사안의 교감협의회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협의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8. 공식적 행사(제6호)

Q.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A.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사유(제6호)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과 원활한 행사진행 지원**을 위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편의·식사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8-1. 교통편의 제공 관련

Q. 외부강의, 업무협의 출장 등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차량을 지원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A.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사례 19. 사회상규(제8호)

Q.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 (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사례 20. 사회상규(제8호)

Q.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

A.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21. 사회상규(제8호)

Q. 공직자들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이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사례 22. 사회상규(제8호)

Q.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동료에게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념패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A. 기념패는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8호)

* 기념패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

▪ 사례 23. 외부강의등(제10조)

Q. 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26. 외부강의등(제10조)

Q.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1

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 되나요?

A.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2

Q.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 서는 안됩니다.

※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하므로 안됩니다.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3

Q.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4

Q.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5

Q.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6

Q.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7

Q.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8

Q.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A.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9

Q.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9

※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제공자	제공 대상자	제공 금액	과태료
법원 관내 변호사	해당 법원 소속판사	2만8천원	4배 부과
물품생산업체 임원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7만8천원	3배 부과
고소인	담당 수사관	4만5천원	2배 부과
분쟁조정 신청자	담당 공직자	3만3천원	3배 부과
행정심판 피청구인	심판담당 공직자	1만8백원	2배 부과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만원	2배 부과
납품업체 직원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9천6백원	2배 부과

· 시행령 개정 관련 사례 10

Q.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A.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이전과 같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범위(법 제8조 제3항 제2호)로, 다른 예외사유(법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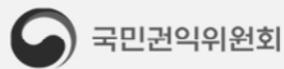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부패공익신고제도 안내

-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바로 알고 처리하기 -

부패 · 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바로 알고 처리하기!



목 차

- I. 부패 · 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정의?
- II. 신고 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
- III.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 IV. 신고 및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신분노출 사례
- V.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1.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은 무엇일까요?



부패신고란 무엇일까요?

부패행위의 개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1 (가목)

- ❖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기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나목)

- ❖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다목)

-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공익침해
행위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



AIDS 감염된
혈액 유통

국민의
안전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환경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
이익



가짜 참기름
유통

공정한
경쟁



LPG
가격 담합

기타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1. 건강분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허위표시



학교급식법

-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를
사용하는 행위



의료법, 약사법

-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광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



식품위생법

-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유통기한
변조, 및 식품
인증마크 불법사용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 안전분야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납품하는 행위



건설기술관리법

- 불성실한 책임감리
등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건축사법

-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해사안전법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3. 환경분야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 유독물을 사용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악취방지법

-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 농약,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4. 소비자이익 분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기본법

- 물품·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5. 공정경쟁 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가격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가격 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법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공사를 따내기 위해 미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채용절차법

- 사업장을 홍보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 하는 행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방위사업법

-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 하지 아니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성 민원이란 ?

- 각종 민원 창구로 접수된 민원 중 **부패·공익침해행위** 를 신고한 민원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인적사항,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신고창구에 관계없이 공익신고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2. 부패·공익신고 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



부패신고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누구든지

(내·외국인 불문,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

신고내용

- ✓ 인적사항
- ✓ 기명의 문서로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
-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제시

신고 방법

- ✓ 방문·우편
- ✓ 팩스 044-200-7972
- ✓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 전화(1398) 상담만 가능

일반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수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기관

신고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누구든지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신고방법

신고내용

- ✓ 인적사항
- ✓ 기명의 문서로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
- ✓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 첨부

신고방법

- ✓ 부패신고와 같음

비실명 대리신고

- ✓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음

누구든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행정감독기관
- 공사 등 공공단체
- 국회의원
-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I. 조사기관 자체 접수 공익신고 사건 접수·처리 절차

접수 (조사기관)	① 신고서 기재사항, 증거 및 신고내용 등 확인 ② 공익신고 접수 ③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 ④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을 확인하여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성 민원'의 경우 부패·공익신고로 처리				
확인 (조사기관)	① 284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②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여부 확인					
처리 (조사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padding: 5px;">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th> <th style="padding: 5px;">관할이 아닌 경우</th> </tr> <tr> <td style="padding: 5px;"> ① 직접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②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td> <td style="padding: 5px;"> ①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 ②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 </td> </tr> </table>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관할이 아닌 경우	① 직접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②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①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 ②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	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② 신고자에게 조사 불개시 사실 등 통보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관할이 아닌 경우					
① 직접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②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①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 ②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					

(주목!)

일반민원의 공익신고 전환 기능

- 민원이 내용상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민원접수 · 담당자 지정 · 민원처리 단계에서 각각 ‘공익신고’로 전환 가능

< 일반민원 → 공익신고 전환 화면 >

Ⅱ. 권익위 이첩 · 송부 공익신고 사건 접수 · 처리 절차

<p>처 리 (조사기관)</p>	<p>①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②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③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결과 통보</p>	<p>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권익위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 등에 이첩</p>
<p>후속조치요구 (권익위)</p>	<p>①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제품회수 등) ② 재조사 요구(공익신고자의이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p>	
<p>조 치 (조사기관)</p>	<p>① 의견제시, 재조사 요구에 따른 조치 ② 권익위에 결과 통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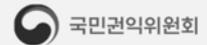


Ⅲ. 부패·공익신고(신고성 민원) 처리시 유의사항

비밀보장
준수

개인정보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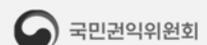
- ✓ 신고자, 피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임의 노출·공개·보도 금지
 - 신고자(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피신고인, 피신고기관에게 전달하는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누설 금지
 -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은 반드시 삭제
 - 민원인이 민원내용 공유에 동의한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사례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민원내용에 개인정보, 고소·고발성 제보 등이 포함된 경우 비공유로 전환
 - 온나라 등에서 생산한 문서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개되므로, 민원문서 기안 시 제목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신고자로 가장해 유선으로 신고내용 등을 묻는 경우 주의 요망
 - 민원내용 및 민원인 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의 공람 및 방치 금지



Ⅲ. 부패·공익신고(신고성 민원) 처리시 유의사항

보호·보상
제도 안내

- ✓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안내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
 - ☞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험, 불이익조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처리결과통지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안내문> 반드시 제공
 - ☞ 공익신고 보호·보상 제도 안내 의무규정 신설(17.10월 시행)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범위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비밀보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 협조자 인적사항 ■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불이익 조치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 부당한 인사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임금 등의 차별지급,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명단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결과 공개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범위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호조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조치 발생시 권익위가 보호조치결정 - 원상회복 조치 -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 지급 -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 ☞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이행강제금
신고자 책임감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 발견시 형,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 금지·제한하는 단체협약·고용계약·공급계약 무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변보호	없음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은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가능
신고방해·취소강요 금지	없음	■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 취소 강요 금지



3.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 신변 보호 요청



➤ 신변 보호 방법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 형·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형벌·징계·행정처분 하는 경우 징계권자, 처분권자는 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 직 무 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치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들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 금지

보호 조치

보호조치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지켜 드립니다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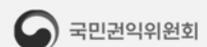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요구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구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요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절차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 처분액의 4~20%를 지급 (최대 30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	공익신고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신청 (이사비, 소송비, 치료비 등)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내부·외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 (친족, 동거인)

(참고)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제도 보호, 보상 비교

부패신고		공익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자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가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로 284개 공익침해 대상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보상포상대상은 아님) 	신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침해행위 발생기관 및 기업 소관 행정·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비밀보호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조치 불응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비밀보호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조치 불응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벌금, 과료, 과징금, 과태료, 통고처분 제외) *상한액:30억, 최저한도:없음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30억, 최저한도: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지급 * 상한액 : 2억 	포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상한액 : 2억



4. 신고 및 민원 처리시 개인정보, 신분노출 사례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유형 1)
신고성 민원
숙지 미흡
피신고기관에
신고자 정보
고의 누출

- ▶ A기관은 OO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 접수 후 해당업체에 전화하여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합의를 권고하였고, 민원인은 해당업체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피해를 받음
- ▶ 철도공사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민원에 대해 B공단이 민원인의 동의없이 시공사인 건설업체에 민원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민원인은 인권위에 개인정보 관련 진정을 제기
 - ☞ 신고성 민원 접수 후 담당자가 공익신고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민원 처리
- ▶ C공무원은 어린이집 관련 내부 공익신고 내용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누설하였고 해당 어린이집은 제보한 교사를 색출해 해고하였음
- ▶ D공무원은 사학비리 제보 내용과 제보자 정보를 해당대학 관계자에게 알려 주었으며,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내부자료를 휴대전화로 전송함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유형 2)
접수·처리
과정에서
부주의

- ▶ 소청위는 OO교사의 승진탈락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E교육청에 자료를 요청 하였으며 E교육청은 이와 관련 OO교사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소청위에 제공, 소청위측도 민원인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소청 신청인에게 전달함
- ▶ F공무원은 OO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익신고 접수 후 해당 어린이집을 조사하던 중 업무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노출
- ▶ G공무원은 모래섞인 시멘트 사용 사실을 신고한 하청업체를 조사하던 중 업체의 전화기로 내부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신고자 전화번호를 노출함
- ▶ H교육청은 예산부적정 사용 관련 소청심사청구 답변서 작성을 위해 조사보고서를 보내달라는 학교의 요청에 신고자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보냈으며 이는 그대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송달됨

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니 유출에 주의하라는 안내만으로는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판례)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유형 3)
수사의뢰

- ▶ I공무원은 신고자 신분을 익명 처리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나, 경찰이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함

(유형 4)
소송관련
문서제공

- ▶ J기관은 공익신고를 처리하여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후 피신고자의 변호사가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신고자의 정보를 요청하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 제공
- ▶ K기관은 공익신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익신고와 해당 소송이 관련이 없음에도 신고자가 해당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공익신고 사실을 기재한 내부 문건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유형 5)
보도자료
및
언론유출

- ▶ L기관에서 사무장 병원 부당 진료비 청구 관련 신고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OO 원무부장의 신고' 라는 신고자가 유추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남
- ▶ 주민지원사업비 관련 민원에 대해 M환경청이 OO시의 요청에 따라 내부결재 문서(민원내용과 민원인 정보 포함)를 OO시에 제공하고 시는 이를 언론기관에 유출함

위반 시 처벌조항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다 나은 정보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법률 확대

➤ 대상분야 확대 (법 제2조)

* 기존 5대 분야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신규 추가

➤ 신고대상 법률 추가 (별표)

* 「채용절차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추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법 제17조)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법 제20조)

*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법 제 23조)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긴급 구조금 제도(법 제27조)
 - *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법 제29조의2)
 -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까지 배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벌칙강화(법 제 23조)

위 반 행 위	기 존	개 정 안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피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시행령 제22조)
 -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법 제8조의2)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 하도록 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강화

➤ 이행강제금 상한금액 상향 조정(법 제21조의2)

내용	기존	개정안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2천만원	3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2년 이내	이행 시까지

같이 만들어가는 더 좋은 세상
공익신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붙임자료

<붙임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6) : 금융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인사혁신처, 통계청

» 기초자치단체 (184)

시 55개	군 82개	구 47개
-------	-------	-------

» 광역자치단체(1) : 경상남도

» 교육청 (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국·공립대학 (23)

강릉원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순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군산대학교	안동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체육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창원대학교	한밭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 공공의료기관 (33)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상북도 울진군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강원도 강릉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대구광역시 의료원	전라북도 진안군의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부산광역시 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경기도 의료원	서울특별시 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인천광역시 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 공직유관단체 (97)

강원도개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창원시설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경기도문화의전당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예탁결제원
경남개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충남개발공사	한국은행
경남테크노파크	서울디자인재단	충북개발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찰공제회	성남도시개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한국재정정보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양시시설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립생태원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중부발전(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여주시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민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천문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용인문화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남양주시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투자공사
노사발전재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울산항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표준협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인천교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개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남개발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해운조합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벤처투자(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대구도시철도공사	정부법무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전KDN(주)
대구시설공단	제주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화성도시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화성시문화재단
			환경보전협회

» 지방의회 (42)

서울특별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강원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충청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경기도 부천시의회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경기도 안산시의회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기도 고양시의회	강원도 춘천시의회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경기도 광명시의회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청렴도 측정』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p style="text-align: center;">최현 서기관</p> <p>☎ 044-200-7633</p> <p>acrc52@korea.kr</p>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군인공제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재정정보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35)			
<p style="text-align: center;">이진희 사무관</p> <p>☎ 044-200-7632</p> <p>leejh79@korea.kr</p>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검찰청 법무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서현우 사무관 ☎ 044-200-7634 senoo1284@korea.kr	<중앙행정기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국립생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직유관단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교육청> 교육청(17) 교육지원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7)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46) <지방의회> 지방의회(42)	<공직유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발전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최지애 주무관 ☎ 044-200-7637 choeja@korea.kr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조달청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병무청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7)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46) <지방의회> 지방의회(42)	<공직유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발전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75)	<공직유관단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이동식 주무관 ☎ 044-200-7630 dslee1@korea.kr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75)	<공직유관단체>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앙행정기관> 소방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구(69)	<공직유관단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은실 주무관 ☎ 044-200-7638 diplo27@korea.kr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군(82)	<공직유관단체> 강원도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공판스포츠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울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도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남테크노파크 광주도시관리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인양시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창원시설공단 충북테크노파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Memo



Memo



Memo



Memo

